

의안번호	제 47 호
의결연월일	2004. 10.

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2004. 10. 15

법무통계담당주사 심사필

#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 47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2004. 10. 15
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

- 생활보호대상자 ⇒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
### 나.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문 정비

- 난방장치 심야전기 사용 의무규정 삭제

## 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(2004. 9. 9 ~9. 30)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호를 삭제 한다

제6조제1호중 “생활보호대상자” 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설설치기준) (생략)</p> <p>1 ~ 4 (생략)</p> <p>5. <u>난방장치는 반드시 심야전기를 활용</u> <u>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을 절약</u> <u>한다.</u></p>	<p>제4조(-----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
<p>제6조(입소대상자) (생략)</p> <p>1. 65세이상 <u>생활보호대상자</u></p> <p>2. ~ 4 (생략)</p>	<p>제6조(입소대상자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65세이상 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</u> <u>의한 수급자</u></p> <p>2. ~ 4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계법령발췌

## 노인복지법

###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.

##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### 제2조(정의) 이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② “수급자”라 함은 이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.